

공원마을 소규모재건축사업 조합설립(경미한 변경)인가 고시

공원마을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조합설립(경미한 변경)인가 신고에 대하여 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」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
2025. 9. 15.

인천광역시 서구청장

1. 사업의 종류 및 명칭

- 가. 종류: 소규모주택정비사업(소규모재건축사업)
- 나. 명칭: 공원마을 소규모재건축사업

2. 사업시행구역의 위치 및 면적

- 가. 위치: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588-8번지 외 2필지
- 나. 면적: 3,033.3m²

3.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

- 가. 착수예정일: 미정
- 나. 준공예정일: 미정

4. 조합의 명칭 및 사무소 소재지

- 가. 조합명칭: 공원마을 소규모재건축사업조합(조합장 윤재희)
- 나. 사무소 소재지: 인천광역시 서구 염곡로 180, 201호

5. 조합설립(경미한변경)인가 내용

- 조합 임원 임기 만료에 따른 연임
- 조합 임원(감사) 선임